전매동의서(민영주택용)

유효기간 전매동의일로부터 2개월

\bigcirc	주택.	의	표시

	아파트	동	호			입주자모족	집공고일	-	년	월	일	
주택소재지						입주자	선정일		년	월	일	
전용면적	. m	i 잔금완	납여부	□미납	□완납	전매제학	한기간			년		
	7) 14					שואור	= .ul =					
분양자 (사업시행자)	성 명				법인등록번호		-					
	주 소			담당부서								
				연락	연락처							
○ 양도인·양수인												
양도인 (수분양자)	성 명				주민등록번호			-	-			
	주 소				연락처	자택						
					[현역시	H.P						
양수인 (제4·7호의 경우에만 작성)	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			_			
	주 소				연락처	자택						
					[한탁시 [H.P						
○ 전매동의사유 (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4항)												
□ 1호:근무.생업.질병.취학.결혼			□ 2호:상속주택으로 이전			□ 3호:해외이주 또는 체류						
□ 4호: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			□ 5호:공익사업 이주대책자			□ 6호:경매,공매						
☐ 7호·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					에게 증여	□ 8호:실직, 파산, 신용불량				불량		

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 의하여 위 표시주택의 분양권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)에 대하여 전매동의 함.

전매동의일 년 월 일

전매동의자: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(인)

※ <u>해당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매입 의사가 없으며</u>, 본 동의서의 유효 기간(전매동의일로부터 2개월)내에 양도인.양수인께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주체(분양자)와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.